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6-약관-047호(2026.05.14)

※ 본 약관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서 제공됩니다.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약관

제정 2026.05.22

제1조(약관의 목적 등)

① 이 약관은 고객이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회사”라 한다)에서 판매하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민참여형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이하 “전용저축”이라 한다)에 가입할 때 고객과 회사 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단, 전용저축이 아닌 일반계좌로 가입한 경우 과세특례와 관련한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조항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회사의 「수익증권저축약관」 등 관련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전용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한다.

1. 납입한도가 2억원 이하(「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모든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에 가입한 전용저축 납입한도의 합계액을 말한다)일 것
2. 제2항에 따른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수익증권 또는 지분증권(이하 “증권등”이라 한다)에만 투자할 것

②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8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③ “저축취급기관”이란 전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제3조(가입)

① 전용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고객은 거주자로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다.

1. 가입일 기준 19세 이상인 자

2. 가입일 기준 15세 이상인 자로서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자(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전용저축의 가입기간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국민성장집합투자기구의 증권등에 3년 이상 투자하는 경우 이에 따른 배당소득(투자일로부터 5년 이내 지급받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9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제5조(소득공제)

① 고객이 2030년 12월 31일까지 전용저축에 가입하고 증권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공제액(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공제한다. 다만, 타인 소유의 증권등을 양수하는 방법으로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고객은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소득공제를 받는 데 필요한 해당 연도의 투자금액이 명시된 국민성장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를 회사로부터 발급받아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공제금액의 산출방식, 공제 순서 등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세제 관련 법령(이하 “세제관련법규”라 한다)에 따른다.

제6조(과세특례 제한 및 추정)

① 고객이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4조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회사는 해당 고객이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세제관련법규에 따라 추정한다.

② 고객이 투자일부터 3년이 되는 날 전에 제5조에 따라 소득공제를 적용받은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일부 환매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회사는 양도액 또는 환매액의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이하 “추징세액”이라 한다)을 추징하여 추징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를 받은 고객이 해당 소득공제로 감면받은 세액이 추징세액에 미달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사망 등 세제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증권등을 양도하거나 환매하는 경우에는 추징하지 아니한다.

④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징세액을 징수한 경우 고객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회사가 제2항에 따른 추징세액(실제로 감면받은 세액상당액을 추징한 경우에는 해당 세액상당액을 말한다)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가입자격의 확인 등)

① 회사는 국세청장에게 고객이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지(근로소득 요건에 한정한다)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회사가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에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며, 회사는 이를 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사는 전용저축이 해지된 것으로 보는 날에 증권등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환매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소득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추징한다.

제8조(자료의 정보제공)

① 회사는 전국은행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고객별 전용저축 가입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고객이 다른 금융회사등에 가입한 전용저축 납입한도를 연합회에 조회할 수 있다.

② 회사는 고객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용저축 납입한도 총액의 세부내역(가입 금융기관 및 금융기관별 가입내역 등)을 조회하여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거래제한)

- ①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사기 이용계좌로 사용될 경우, 회사는 해당 계좌명의인에 대해 계좌개설, 해당 계좌의 인출·이체한도 축소 등 금융거래를 제한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제한될 경우 회사는 지체 없이 해당 계좌명의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약관의 변경 등)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기존 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신·구대비표 등)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거래소 규정 등의 제·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 전까지 개별통지(신·구대비표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

(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관계법규등 준수)

고객과 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세제관련법규 등(이하 “관계법규등”이라 한다)을 준수한다.

제12조(분쟁조정)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 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3조(관할법원)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고객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66조의2에 따라 방문판매 및 유선·무선·화상통신·컴퓨터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고객 주소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제소 당시 고객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본문에서 정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금융상품 계약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14조(관계법규등 준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등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부 칙

이 약관은 2026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